

「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4. 3. 1. 제정 판 (시행 2004. 3. 1.) → 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2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54/compare?from=122&to=12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5:58:2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설치)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활동위원회를 둔다.	제1조(설치)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_활동위원회를 둔다.
제3조(구성) 1. 위원회는 총장, 교목실장, <u>학장</u> , <u>처장들</u> , 교목과장, 기획실장, 총무과장, 복지지원과장, 생활교육관장, <u>AY 지도교수</u> , <u>안식일학 교지도교수</u> , <u>절제회 지도교수</u> , 신학과장,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. 2. 본 위원회의 의장은 <u>처장</u> 이 하며,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.	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, 교목실장, 처장(4), 교목부장, 기획실장, <u>학생 지원부장</u> , 생활교육관장(2), <u>신학대 학원장</u> , 신학과장, 교목실 팀장(3), <u>선임학부장(4)</u> ,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.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<u>총장</u> 이 하며,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.
제4조(임명 및 임기) 1.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2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<u>연임</u> 할 수 있다.	<삭 제>
제5조(직무) 1.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2.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.	제4조(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.
제6조(회의) 1.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. 2.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. 3.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위원장이 소집한다. 4.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5조(회의)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.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.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기도주일위원회) 1.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산하에 기도주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2. 기도주일위원회는 처장들과 교목실장을 공동 책임자로 하여 부목사들과 총학생회 종교부장으로 구성한다.	<삭 제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종교활동위원회"를 "종교 활동위원회"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, 교목실장, 처장(4), 교목부장, 기획실장, 학생지원부장, 생활교육관장(2), 신학대 학원

장, 신학과장, 교목실 팀장(3), 선임학부장(4),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.

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제4조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.

제6조를 제5조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회의)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.

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